

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·건물및자동차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7. 30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7월 23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7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6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7. 30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세무 2 과장 정형진)

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의 내용은 자활촌에 거주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구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그의 국가유공자에게는 구세면제 혜택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이군경외 4·19 의거 희생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에게도 구세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상이군경외 다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도 감면
- 현행 조례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이등급 2급의 경우 14호외 6개 상이호수인 주로 다리부분에 상이가 있는 자에게 구세를 면제하던 것을 2급의 상이자 전원에게 구세면제 혜택을 주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전문 4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고 1994. 12. 31까지 적용하는 한시조례로서 구세 중에서 주로 자동차 면허세만 대상이 되며 지방세법 제 7 조의 “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” 및 “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” 등의 근본 취지에 반영하여 수혜자 폭을 넓이고자 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자	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강정순 위원	조례가 개정되면 추가면제 대상자 및 면허세 감면액은 얼마인지?	현행 조례에 의하면 보철용승용자동차 면제 대상차량은 72대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약 50대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 우리구는 국가유공자 자활촌은 없으며 토지·건물에 대하여는 면제 실적이 없고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됨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)